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31
----------	---------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송순호, 박성호, 김현희, 김동협
황영호, 강선영, 신낙형, 이충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로컬푸드의 이용촉진과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조례의 기본이념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유통 지원, 소비촉진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로컬푸드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협조부서: 지역경제과
- 다. 입법예고: 2022. 3. 11. ~ 3. 16.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포장·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4. 로컬푸드 판매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유통 지원)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포장재 및 잔류농약 검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비촉진)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음식 및 식재료 제공사업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로컬푸드 홍보)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인터넷·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급이 부족한 특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인근의 시·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 9.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

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